

그리고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중국이 최초로 외국 정상과의 공동성명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킨 것이었다. 둘째로는 각종 국제인권체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켰다. 다시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하는 동시에 각종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도 다시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1997년 10월 “경제, 사회 및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1998년 10월 “정치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서명하였다. 전자는 2001년 2월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되었으며 후자는 중국 정부는 아직 헌법 및 국내법과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일부 국제인권기구 관련자를 중국을 초청하였다. 1994년에는 UN 종교 관용 특별위원회, 1996년에는 UN 임의적 구금에 관한 작업반(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의 관계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였다. 그리고 1998년과 1999년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하는 등 인적인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즉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화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자 중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국제인권체제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과거의 국제인권체제와 개별 국가의 주권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인권체제의 정신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인권체제가 국내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권은 국가 간의 평등하고 상호존중하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인권문제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인권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코소보 사태에 대해서도 중국은 NATO의 군사적 개입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미국이 주장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주권보다 더욱 우선적인 가치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입장이라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앞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예상한다면 이러한 조심스러운 입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제규약 가입이 당장 중국 국내의 인권상황의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주고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현재로서

는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참여와는 달리 국제인권규약에 가입이 중국 국내의 행위규범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개혁의 가속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WTO 가입은 중국이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국제 규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는 점으로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인권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8년 북경 올림픽은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통치에 유리한 영향을 주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상황에 대한内外의 압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³⁾

5. 2008년 북경올림픽과 인권

올림픽 유치전이 결정으로 치닫고 있던 올해 7월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인 웨이징생(魏京生)은 북경올림픽을 과거 히틀러 시대의 베를린 올림픽에 비유하며, 북경올림픽은 중국의 침략적 민족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경의 올림픽 유치를 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북경올림픽이 결정된 직후 CNN의 중국 분석가인 윌리 램도 중국은 올림픽 유치의 성공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적 승인으로 간주할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앞으로 7년 동안 올림픽은 통치세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의 경우 북경의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후 올림픽은 중국이 보다 개방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북경올림픽을 지지하였던 많은 서방 인사들이 내세웠던 논리도 봉쇄보다는 국제사회

3) IOC 위원장은 2002년 4월 4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약속한 것처럼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주최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하여 IOC 관계자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주최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국의 변화에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 이었다. 과연 이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욱 현실에 가까울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중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념체계와 정치체제를 구축해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의 추진된 개혁개방에 따라 계층분화와 이익구조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도시의 등록실업자의 수는 1992년 364만에서 1997년에 570만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등록실업자 이외에 시아강(下崗)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실업은 1993년에 300만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1151만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아강을 포함한 도시실업률은 1993년의 4.48%에서 1997년 처음으로 8%를 넘어섰고, 1999년에는 8.69%에 달하였다(陳佳貴, 2001, p.123). 사영기업, 외자기업의 증가와 국유기업의 경우도 노동관계에 계약제를 도입하면서 노사관계에서도 대립적인 측면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사이의 소득격차의 증가도 체제의 안정성과 통합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1999년 발생한 파룬공 사태는 이러한 위협이 잠재적인 상황에서 점차 표면화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에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장저민은 2000년 1월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매우 귀한 발전의 기회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방세계의 정치관점, 이데올로기, 생활방식의 영향과 개혁의 심화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르는 경제성분, 이익주체, 사회조직과 사회생활방식의 다양화를 새로운 모순, 새로운 문제로 지적하였다.(十五大以來(中), pp.1108). 그 동안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민의 이익은 근본적으로 통일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다원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중국의 인권문제에서 노동권 등 집단적인 정치, 사회적 권리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응은 장저민의 소위 “세개의 대표론”에 잘 나타나 있다. 북경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기 직전인 2001년 7월 1일 장저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창당 80주년을 기념하는 소위 “7·1 연설”에서 사영기업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 봄 장저민이 발표하였던 “세 개의 대표론(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 중국선진문화의 전진방향, 중국의 가장 폭넓은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주장)”에 기초하여 제기된 방침이다. 위의 3개 대표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첫 번째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이론에서도 생산력이 사회발전과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지만 이는 계급구조와의 관계 속에서만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사용되고 있는 생산력 개념은 중립적인, 경제적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의 논리는 매우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즉 “세 개의 대표론”은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해설에서는 부정되고 있지만 노동계급의 선봉대라는 당의 계급적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하였다. 위의 7·1연설은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된 것이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기존의 개혁개방정책의 논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등장할 사영기업가를 당내로 끌어들여 상황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은 아직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체제와 일원적 운영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체제 사이의 갈등은 2008년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된다면 격렬한 충돌을 피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형성하는 과도기를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에서는 분배구조에서의 불평등 문제,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WTO 가입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증폭시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가능성성이 높다.(Fewsmith, 2001b, p.590) 그리고 올림픽 바로 한해 전인 2007년 가을에는

제17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정치세력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이는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7년 한국 정치의 전환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올림픽이 중국 인권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간접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인권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도 올림픽 주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각종 국제교류의 증가 속에서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의 인권상황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정부는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를 전후로 돌발적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미리 나선다면 이는 중국의 인권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올림픽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림픽은 중국 사회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중국 정부의 보다 협력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북경 올림픽은 그 유치과정에서 개최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당장 지금까지 진행된 정치화, 상업화에 명들고 있는 올림픽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올림픽 운동의 주도세력이 인권보다는 정치, 상업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어 인권을 올림픽 운동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데 소극적이며 중국 정부도 올림픽에서 인권이라는 의제가 제기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특히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인 시각에서 제기하거나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

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인권문제의 해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만 90년대 들어 중국의 인권 문제는 점차 국제화되어 왔고 올림픽은 이러한 추세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는 인권의 정신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올림픽은 중국 정부가 인권 발전 및 정치체제 개혁을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적절한 관심과 협력은 세계 질서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는 중국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대화가 서로 경쟁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신뢰의 축적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鄧小平文選-第三卷』

『十五大以來(中)』

陳佳貴(2001), 『社會保障綠皮書中國社會保障發展報告(1997-2001)』, 社會科學文獻出版社.

談放·趙無眠(1996), 『文革大字報精選』, 明鏡出版社.

朱鋒(2000), 人權與國際關係, 北京大學出版社.

Burr, William(1998), *The Kissinger Transcripts*, The New Press.

Carlson, Allen Russel,(2000), *Constructing a New Great Wall: Chinese Foreign Policy and the Norm of State Sovereignty*, A Dissertation Presented to Yale University in Candidacy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 Fewsmith, Joseph(2001a), *China Since Tiananm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1b),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The China Quarterly*, No.167(September 2001).

Harding, Harry(1992),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The Brookings Institution

Lampton, David M.(2001), *Same Bed Different Dream: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Nathan, Andrew J.(1999), "China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Regime", Economy, Elizabeth and Michel Oksenberg ed., *China Joins the World*, A Council on Foreign Relation Book.

Ross, Robert(1995), *Negotiating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9-1989*. Stanford University Press.

news.bbc.co.uk/hi/chinese/news

www.humanrights-china.org(中國人權協議會 homepage)

www.state.gov/g/drl/hr(미국국무부)

web.amnesty.org/ai.nsf/COUNTRIES/ CHINA?OpenView&expandall(эм 네스티)

일본의 월드컵과 인권

- 서포터와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중심으로 -

하 종 무

(한신대 국제학부)

일본의 월드컵과 인권

- 서포터와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중심으로 -

하종문

(한신대 국제학부)

문제의 제기

일본에서의 축구 붐은 1993년 5월의 J리그 출범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시 결정적인 전환점은 1997~8년의 프랑스 월드컵 예선과 본선에서 찾아야 한다. 1993년 다 잡았던 미국 월드컵 출전이 ‘도하의 비극’으로 극적으로 좌절되고 나서 맞이한 1997년의 최종 예선은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었고, 서포터의 심경은 “축구의 신이시여. 가즈(공격수 미우라 가즈요시, 인용자)의 오른 다리가 아프다면 대신에 내 오른 다리를 아프게 해 달라. 요시카쓰(골키퍼 가와구치 요시카쓰, 인용자)의 손이 아무래도 볼에 닿지 않는다면 내 오른 손을 가져가 달라”¹⁾의 표현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쨌든 일본은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고, 고양된 축구 열기는 시드니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이벤트를 징검다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90년대 말의 폭발적인 축구 열기 이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민족공동체의 확인’일 수밖에 없는 이 이벤트에 필수적인 상징의례로써 등장하는 국기·국가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의 각종 월드컵 관전기를 쫓아가 보면, 그 동안 그들의 삶과는 무관하던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새롭게 재인식하게 된 일본 젊은이들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1) www.din.or.jp/~yajin/text/talk7.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다. 축구에의 전면적인 몰입 혹은 서포터로서의 경험을 통해 개인과 국가, 내셔널리즘 등의 생경한 주제들이 히노마루·기미가요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관심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귀에 익은 나카타 히데토시(中田英壽)가 겪어야 했던 기미가요 소동도 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핫 이슈 중의 하나인 국기·국가법이 1999년 8월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2002년 월드컵의 특징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에 있다. 그리고 중국도 아시아에서 치러지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는 냉전의 퇴색과 더불어 정치 논리로 얼룩졌던 월드컵은 경제적 월드컵에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얘기되지만, 동아시아 3국의 경우는 지난 세기 전반의 가해와 피해의 역사가 여전히 만만치 않게 응어리로 남아 있다. 과연 공동 개최국인 한일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3국에게 이번 월드컵은 역사적 화해의 장으로 기록될 것인가?

본고에서 일본에서의 월드컵과 인권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근저에는 이런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경험이 갈려 있다. 현재까지 민간 부문에서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거부하는 그룹들과의 연대가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견인해 왔으며, '좋은 일본인'과 히노마루·기미가요는 분리되어 우리 눈에 비쳤다. 그렇지만 축구라는 공통의 룰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경기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서포터들은 히노마루·기미가요에 열광하는 일본의 서포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권과 배타적 내셔널리즘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 점에서 1990 대 후반의 축구 붐에 힘입어 침략의 상징인 히노마루를 휘두르고 억압과 수탈을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노래하는 일본의 젊은 서포터들의 내면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동시에 이는 향후 동아시아에서의 보편적인 인권을 내용과 주체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된다.

1. 일본에서의 축구·월드컵

1) J리그의 출범과 서포터의 탄생

1993년 5월의 J리그 출범은 100년의 일본 축구사를 새로 쓰게 했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²⁾. 1989년의 조사에서 축구는 단지 4%의 인구가 즐기는 24위의 스포츠였지만, 4년 뒤에 시작된 J리그는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 버렸다. 첫 시즌에 벌어진 거의 모든 게임이 매진될 정도로 관람객이 몰렸고, 첫 해의 J리그 수익은 1,400억 엔으로 추정될 정도였다. 때마침 벌어진 1993년 10월 28일의 이라크와의 월드컵 예선전, 즉 '도하의 비극'은 스포츠 중계로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인 48%를 기록했다.

이런 '축구 기적'은 기존의 축구 문화마저 송두리째 바꾸어 나갔다. 1991년의 한 경기에서 "응원이라고는 이따금씩 스탠드 중앙에 앉은 소수의 외국인이 만드는 맥빠진 파도타기뿐"으로 "관중은 관중일 뿐 팬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17일의 올스타 게임의 관중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북과 응원나팔, 함성, 응원가 등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소음은 시끄러웠다. 응원가는 전반적으로 삼바 리듬을 띠고 있었으며 어떤 응원단은 삼바춤을 추기까지 했다.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 응원전은 지금껏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대단한 축구쇼였다.

1992년 10월 3명으로 출발한 J리그 가시마(鹿島) 앤틀러스의 팬클럽은 1년도 안 지나서 3,000명으로 늘었고, 도시로 빠져나가는 젊은이 수가 현저히 줄고 폭주족까지 사라졌다 보고도 있을 정도였다. '서포터'가 탄생한 것이다.

축구의 경우는 1990년대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은 스포츠이니 만큼, 스모나 야구의 응원 문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J리그는 새로운 일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수들과 응원단이 모두 자신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시작부터 외국 선수들이 잔뜩 포진한 게임이 벌어졌고, 시합의 승패를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는 스모 선수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외국 선수들처럼 일본 선

2) 이하의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조나단 왓츠, 「일본 축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 돌로레스 마르티네즈 편 『왜 일본인들은 스모에 열광하는가』, 바다출판사, 2000에서 인용했다.

수들도 자신의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한다. 선수 출신 J리그 임원의 말을 빌자면, “우리는 (일본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 받은 최초의 프로 선수들이다”고 얘기된다.

J리그의 출범은 “운동 선수의 성격을 매우 중시하”며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던 전통적 운동관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³⁾. 전통적인 일본의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덕성은 개인의 희생과 팀=집단 중심적 사고이고, 이를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격식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하지만 축구의 경우는 다르다. 이런 전통의 파괴는 연공서열·종신고용제의 붕괴, 집단에 대한 충성심의 강도는 갈수록 약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다. 하시모토 오사무(橋本治)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구 사회’에서 ‘축구 사회’로의 전환이 엿보이는 것이다⁴⁾.

2) 절대적 가치로서의 축구

축구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관심사를 끌고 있다. 야구나 농구가 미국 중심의 해계모니 하에서 연출되는 데 그치고 있다면, 월드컵은 국가와 민족, 인종, 빈부를 초월하여 전세계의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장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 새로운 문화로서 시작된 J리그는 축구와 월드컵을 자신의 삶에 직접 투영하는 젊은 세대들을 양산해 나갔다. 물론 사람에 따

3) 박홍규·정홍익·임현진 공편 『스포츠 사회학』, 나남출판, 1992, 210쪽. 따라서 일본 야구 팀에서는 “봉급 인상 투쟁, 팀 전체에서 자기만 예외로 해 달라는 것, 화를 잘 내는 것, 변덕스러움, 불평 불만, 폭력, 심판 폭행, 감독에게 대드는 것, 매스컴에 항의하는 것, 욕을 잘 하는 것, 훈련 규칙을 위반하는 것, 주먹질하는 것 등 불미스러운 행동은 철저히 비난받는다”고 얘기된다(앞의 책, 『스포츠 사회학』, 209쪽).

4) 橋本治, 「サッカー社會と野球社會」, 『中央公論』 1998년 10월호. 하시모토에게 J리그의 출범과 성공은 “‘야구를 하고 회사 인간이 된다’는 전후 남성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쳤다. 실력이 없으면 ‘외야’를 맡으면 된다는 야구식 발상은 ‘무능’은 포용해도 ‘싫다’라는 선택은 인정하지 않는 ‘회사 사회’, 즉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을 뿌리내리게 했고, 이는 고도성장의 신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베블의 붕괴는 이런 회사주의를 뒤흔들었고, ‘프리타(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젊은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그에 비해 축구는 전원이 필요한 임무를 달성해야 되는 ‘능력 중시’의 논리가 작동하며, 고도성장기에 들어와 축구 교실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보급되었다. 그런 전사를 바탕으로 탄생한 ‘프로 야구에서 J리그’의 구호는 일본 사회의 세대 교체를 의미하며, 바로 이 점에서 일본은 ‘야구 사회’에서 ‘축구 사회’로 옮아가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시모토는 진단한다.

라서 다르겠지만, ‘축구 매니아’로 불려줄 만한 사람들의 경우는 서포터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개인의 삶에 가히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의 경우가 그러하다.

잠시 축구 바보 얘기를 하자. 13일(1997년 11월, 인용자) 목요일의 일이다. 나는 직장에서 말레이시아에 가기 위해 월요일 휴가를 신청했다. 이번 최종 예선전 첫 방문 경기 UAE전 때 직장에 대표 유니폼을 입고 갔던 나다. 축구 바보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에 갔던 것도 모두 알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갈 것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속 상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휴가를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히 허용될 일이 아니다. 나는 『말레이시아에 가는 일은 회사로서 허락할 수 없다』 『이 이상은 묵인할 수 없다』 『굳이 말레이시아에 가려고 한다면 사표를 쓰고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주저 없이 사표를 썼다. 그리고 다음 날 수리되었다⁵⁾.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의 마지막 출전권이 걸려 있던 이란파의 시합 때의 일로, 실로 2만여 명에 달하는 일본 젊은 서포터가 낯선 이국의 축구 경기장에 운집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하시모토의 글처럼 회사와 축구 중에서 축구를 선택하는 ‘축구 바보’가 배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축구 그 자체에 몰입하는 서포터도 있지만, 축구 선수 개인에의 지향이라는 의미가 강한 경우도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의 일이다.

나카무라 슌스케의 열성팬이라는 도쿄 도 거주 가네다 게이코(金田惠子) 씨(27)는 시합을 보러 가기 위해 법률 관련 회사를 사직했다. 「상사는 그런 이유로 사직한다면 다른 사원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준다고 설득했지만, 슌스

5) www.din.or.jp/~yajin/text/talk17.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케 때문입니다. 지금 절정인 그는 다시 볼 수 없겠죠』라면서 히노마루를 폐인팅한 볼을 부끄러운 듯 물들였다. 결전인 20일의 브라질 전이 28세 생일. 「최고의 생일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 순스케의 셋트 플레이로 결승 토너먼트 진출을 획득했으면 한다」고 뜨거운 러브콜을 보냈다.⁶⁾

일본 축구를 응원하기 위해 남반구로 날아간 서포터는 1만 명이 넘었다.

축구는 야구나 스모와는 달리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무대가 펼쳐진다. 경기 자체에 대한 애착이든 선수에 대한 몰두이든 이 무대에 함께 하기 위해 서포터는 자신의 직장까지 포기하는 '사회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도하의 비극'으로 직전에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어느 새 도쿄의 국립경기장은 '성지'로 칭해지기 시작했다⁷⁾.

2. 서포터와 히노마루·기미가요

1) 스탠드의 '원초적 내셔널리즘'

"월드컵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대신하는 것이기에, 마지막에는 고향이나 국가가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⁸⁾는 말이 보여주듯이, 국가 대항전이 되는 국제 시합은 서포터들에게 자연스럽게 내셔널한 것을 자각시킨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상징으로서의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대한 것이다.

[전략] 「깃발을 만들자」고 행동대장이 말했다. 회사에는 미안하다 싶었지만, 숙직실에 산처럼 쌓여 있는 시트를 한 장 들고 나왔다. 급탕실에서 쟁반을 가져와 중간에 큰 원을 그리고 빨갛게 색칠했다. 히노마루를 만들었으니 뭔가 글자를 써넣고 싶어진다. 어떡하지. 아래저래 궁리한 끝에 나중에 온 멤버가 「한 글자면 되지 뭐」라고 단언. 결코 달필이라 할 수 없지만 손으로

6) 「キャンペラに日本サポーター1万人」, 『日刊スポーツ』 2000년 9월 18일.

7) www.nippon12.com/j-net/nippon/bbs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8) www4.justnet.ne.jp/~jyl/diary/kimigayo/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써 넣은 그 깃발을 보고 스스로도 감동하고 말았다. 히노마루라는 아름다운 국기를 갖고 이런 아름다운 한자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서 좋았다. 과장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은 「흔」이라는 글자였다.⁹⁾

21시 전. 선수 입장. 언제나처럼 「그 음악」과 함께 선수가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낸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의 종이 눈. 국립(경기장, 인용자)과 마찬가지다. 국가 제창 때 나는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어 하늘 높이 올렸다.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었다. 최종 예선, 이것이 마지막 국가 제창이다. 멀리 말레이시아 땅은 그 시각 2만 명의 일본인의 노래 소리에 휩싸였다. 세계에서 몇 만, 몇 백만의 일본인이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노래했을 것이다. 스타디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자, 엄청난 수의 동료들의 염원, 기도 그리고 흔을 일순 감지한 느낌이었다.¹⁰⁾

기미가요를 "오즈모(일본 씨름, 인용자) 시상식 노래"로 착각한 사람도 있었던¹¹⁾ 젊은 일본인들에게 축구 경기장은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새롭게 체험하고 인식하는 장으로서 가능했다.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1차전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시합을 한 서포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정도로 큰소리로 국가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그 날 5만여 명으로 가득 찬 국립 스탠드에 있던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지축이 올리듯 퍼지는 기미가요. 터질 듯한 박수와 함성. 그라운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흘날리는 종이 눈. 무릎 끓고 공에 염원하는 가즈와 조. 역사가 될 최종 예선의 개막이다.¹²⁾

프랑스 월드컵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 그 성공

9) www.din.or.jp/~yajin/text/talk7.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10) www.din.or.jp/~yajin/text/talk17.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11) www.fcjapan.co.jp/KSL/story/368.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12) www.din.or.jp/~yajin/text/talk7.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은 동시에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부활로도 인식되었다. “이 정도로 많은 일본인이 유럽에서 “기미가요”를 부른 적이 있을까”라고 스스로도 놀라워하면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도쿄의 국립 경기장의 일본 대표 시합에서 부활하여 드디어 프랑스의 툴루즈, 그리고 이 곳 낭트까지 축구 서포터의 대군과 함께 와 있다”¹³⁾고 명확히 자각하고 있다. 낭트에 같이 있던 다른 서포터는 스탠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국가 제창은 일본부터입니다. 이 낭트까지 팀도 우리 서포터도 잘 왔구나 생각하면서, 백 스탠드 지붕을 따라 프랑스 국기를 중앙으로 피파 연맹기, 페어플레이 기, 그리고 끝에 크로아티아 국기와 대치하면서 가장 왼쪽에 천천히 바람에 나부끼는 히노마루를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요~오니~이이~, 야~치~요~오오니이」에서 뭉클해졌습니다. 기미가요가 끝나자 역시 스탠드의 여기저기서 일본 서포터들이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¹⁴⁾

이런 분위기는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까지 이어져, “선발 발표 후, 선수 입장, 국가 제창. 이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기미가요를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¹⁵⁾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서포터들이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의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팀의 모습이 특별하게 와 닿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령 최용수의 경우, 거수 경례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노래는 안 불러도 기세가 대단해. 임팩트가 엄청 나게 커서 이런 놈에게 이길 수 있을까 싶어 움찔했”라고 하면서, “한국 선수는 그 외에 전원 가슴에 손을 얹는 가즈 모드였으며, 고정윤의 자신에 찬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고 회상하고 있다¹⁶⁾.

그리고 그들은 정확한 맥락을 가늠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변화하고 있

다는 점을 분명히 감지하게 된다. 한국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찾은 한 서포터의 관전기이다.

국가 제창

야나기 조지의 독창을 따라 서포터도 기미가요를 제창. 나도 제창. 지금까지 이렇게 큰소리로 기미가요를 부른 적은 없었다. [중략] 완전연소였습니다.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한 것이 몇 년만일까요. 그래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간다아아아, 프랑스!

총괄

해외에서 처음으로 축구를 관전했습니다. 집단 심리에 빠져 들어가는 자신에게 두려움과 쾌감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합으로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¹⁷⁾

“특정한 스타일의 공유와 약속된 장에서의 활동이 없이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서포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¹⁸⁾.

2) 서포터에게 감지되는 히노마루·기미가요의 상징성

축구와 월드컵 봄의 확산은 표면적으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부활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원래 히노마루·기미가요에 무관심을 표명해 왔던 젊은 세대들의 ‘전향’은 과연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전전의 역사까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위험한 징후인가. 아니면 ‘전전한 원초적 내셔널리즘’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와의 단절이 포착되는가.

먼저 젊은 서포터들이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수용하는 돌파구는 ‘관습’이다. 다음의 두 의견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3) www.fcjapan.co.jp/KSL/story/368.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14) www.geocities.co.jp/Colosseum/2333/izaboj/wckansen.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15) www19.cds.ne.jp/~naoshi_y/kansen/kansen_others.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16)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html(2002년 5월 25일).

17) www2.osk.3web.ne.jp/~tetty/korea.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18) 이동연, 「붉은 악마’와 서포터즈 문화», 『당대비평』 2002년 여름호, 삼인, 208쪽.

드디어 오늘이 왔다 축구여. 기미가요 부르지 않을래, 어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메이지 아래의 관습으로 불러야지. 뭐 좋잖아. 『기미』가 천황 이든 아니든. 국가 정도는 부르자고.¹⁹⁾

확실히 음악적으로 멋진 것도 아니고 국가로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손사래 치더라도 관습법적으로는 이것을 대신할 것이 없죠.²⁰⁾

축구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얘기되지만, 서포터들에게는 게임의 감각이 새롭게 결부되어 있다. “범용 결전 귀화 병기”로서 로페스 와그너를 이름짓는 것도 그러하거니와²¹⁾, 게임의 도구로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규정하는 발상이 창조되는 점에서이다. 이것은 일본인의 국제화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나라가 자신들의 국기와 국가로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고 한다²²⁾.

한국 선수는 전원 가슴에 손을 대고 노래했다. 그에 비해 일본 선수는 명청히 서 있을 뿐이다. 그것을 본 순간 일본은 졌다고 생각했다. 당신들은 일본 대표다. 태연자약하게 이긴다면 그나마 낫다. 그러나 그 정도로 간단히 이길 수 없다는 건 도하에서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본 국민은 *歯がない*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입으로는 월드컵을 전쟁이라 말하면서, 국가조차 부르지 않는다면 도무지 일본 대표라고 할 수 없다.²³⁾

음 역시 기미가요는 불러야 했어. 글쎄 그런 일체감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길 수 없음은 당연. 저쪽은 포클랜드 분쟁을 일으켰다가 졌던 영

19) www4.justnet.ne.jp/~jyl/diary/kimigayo.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20)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2.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21) www4.justnet.ne.jp/~jyl/diary/kimigayo.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22) 고베(神戸) 외국어 대학의 오사 시즈에(長志珠絵)의 지적이다. 『朝日新聞』 1999년 11월 26일 석간.

23) www.ogumen.com/al2/1078-875.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터리 나라니까 국위 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연습했을 터이니, 연습량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최후에는 마인드의 문제가 될 것이고, 기미가요 자체는 히노마루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회박하다고 생각되니.

기껏 프랑스까지 모두 왔잖아, 그 파워를 쓰지 않으면 아깝지. 일교조 교육의 무서움과 오카다 감독의 지도력 부족을 느낀다.²⁴⁾

어떤 면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이들의 게임에 동원되고 소비되는 ‘상품’일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가벼워진’ 국가의 상징물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무게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서포터들에게 히노마루·기미가요는 선수와의 일체감을 매개하는 ‘절대적인 장치’임에 틀림없다. 거기에 ‘탈 정치화’의 메시지를 담은 매스컴 쪽의 지원사격이 가세되면 결합의 정도는 더욱 강해진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해서는 복잡한 생각을 가진 세대도 일본에 있지만, 젊은 일본 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순수하다. 시합전의 국가 제창에서 「기미가요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선발뿐. 굉장히 기분이 좋다」(요코하마 마리노스 松田), 「선수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요코하마 마리노스, 破戸)이라고 한다.²⁵⁾

앞의 관전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교조 교육의 무서움’이 언급되어 있듯이, 이들도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특히 기미가요의 가사가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그들은 기미가요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다.

쓰노 다비로의 국가 연주. 보통은 국가야 부르지 않지만, 대표 시합은 다르지. 큰소리로 부른다. 이전에 국가가 걸끄러워 부르지 않았던 즈음, 니프티(일본의 웹사이트, 인용자)의 축구 포럼에서 「기미가요의 기미는 사랑하는

24) www4.justnet.ne.jp/~jyl/diary/kimigayo.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25) www.kyodo.co.jp/kyoudonews/2001/worldcup/rightme..../bunka02-2.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사람이라는 뜻이었대. 국가가 되기 전에는.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부를 때의 기미는 대표의 일례뿐이며, 응원하고 있는 우리 서포터가 되는 거지…」라는 글을 읽고 깨쳤다. 스타디움에서는 큰소리로 부른다, 「기미가요는…²⁶⁾

자기들만의 문화 코드로 재해석하여 탄생한 ‘축구국’의 국가가 기미가요이고 국가가 히노마루인 셈이다. 여기서 결코 러웠던 시절을 만든 장본인은 일교조를 비롯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반대하는 기성 세대일 것이다. 그래서 서포터들은 그 기성세대가 만든 ‘결코 러움’에 대한 도전의식과 적대의식을 감추지 않는다.

위정자가 국민을 어떻게 다루든지 고식적인 어른들이 아이들을 꾀든지, 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의 지주로 기미가요가 확실히 자리잡은 것입니다. 기미가요를 부르는 서포터의 정성이 확실하게 대표 선수에게 전달된 결과가 이승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기미가요가 천황 예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식의 까다로운 얘기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국가 제창이 싫으면 안 보면 된다. 서포터에게 ‘지금의 신(히어로)은 다름 아닌 스즈키이고 나카타 히데이다. 그걸로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축구 월드컵이 일본을 하나로 만들지 모른다. 그런 예감이 약간 듭니다.²⁷⁾

26) www.pluto.dti.ne.jp/~hyoudou/kansen.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1999년에 들어와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란거리로 등장하게 되자, 다음과 같은 주장도 출현했다.

나는 국기 히노마루 찬성, 국가 기미가요 반대의 입장을 계속 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천황의 세상」이 아니며 「기미가요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패전으로 영원은 아니게 되었으니. 그러나 작금의 특히 월드컵, 축구 등에서 서포터가 선수와 함께 부르는 「기미가요」에는 국가로서의 기능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미가요(君が代)의 기미가요(キミカヨ)화」이다.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표기가 있는데, 국가에 관해서 표의문자인 한자가 물의를 빚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쇼호르발(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이 열린 말레이시아의 도시, 인용자)에서 기미가요를 부른 선수나 서포터 가운데 「사자레이시(조약돌, 인용자)」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기로에 선 선수와 일체화되고 싶어 기미가요를 부르는 느낌이다(www2b.biglobe.ne.jp/~mint/street/mint_054.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27) www.asahi-net.or.jp/~sa8y-skmt/Pages/antlersfan.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들은 축구 경기의 한 부분인 스탠드라는 장을 이용하여 원래 축구와의 결합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자신들만의 특정한 ‘문화’로서 재편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장으로 격리시키고 싶으면서도 “축구 월드컵이 일본을 하나로 만들지 모른다”고 예감한 것은 이들이 뿌리칠 수 없는 ‘현실의 힘’을 감지했기 때문은 아닐까.

3. 나카타와 기미가요 소동

1) 사건의 경위

서포터의 히노마루·기미가요 수용은 급기야 선수들에게까지 강요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현재 일본 축구 선수 중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카타 히데토시의 경우 기미가요 문제로 구설수에 올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²⁸⁾.

1998년 1월 4일 『아사히 신문』의 「현대 기인전」이라는 기획 기사에 나카타의 인터뷰가 실렸다. 그 중에 “국가, 촌스럽죠. 기분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싸우기 전에 부를 노래는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소동의 발단이었다²⁹⁾. 기자와의 잡담 중에 나온 말이어서 나카타도 기사에는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문에 실리고 말았다.

이 보도가 나가자 대일본광심숙(大日本宏心塾) 등의 우익 단체가 나카타가 그동안 국제시합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점, 나카타의 기미가요 발언 등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나카타 본인, 소속팀, 그리고 일본축구협회에 전달했고, 횟수의 증가와 내용의 과격함으로 인해 파문은 견접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나카타는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되어 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경호원 까지 고용해야 했고, 신경성 피부염에 시달릴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 주위 사람들에게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28) 자세한 전말은 小松成実, 『中田英寿·鼓動』, 幻冬舎, 1999에 실려 있지만, 필자는 아직 구입하지 못했다. 이하의 내용은 몇 개의 인터넷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29) 『朝日新聞』 1998년 1월 4일 조간.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고 싶은 사실은 이전부터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선수 중에 나카타는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의 어웨이 결전을 앞둔 1997년 10월 9일, 한 서포터는 나나미 히로시와 야마구치 모토히로, 주장 이하라 마사미 세 선수에게 직립부동 자세로 감독과 선수 전원이 국가를 부르는 한국을 본받아 기미가요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다른 서포터는 일본 선수 중에서는 미우라 가즈요시만 불렀다고 지적했다³⁰⁾. 요컨대 나카타는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것이었다.

나카타에게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압박은 날로 커져갔다. 축구협회의 종용은 물론이거니와,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의 '감시'도 더욱 철저해졌다. 때마침 귀화한 로페스의 경우는 기미가요를 배워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가 『도쿄 스포츠』에 실렸는가 하면, TV에서는 나카타가 고등학교 때 "나라를 짚어지고 일어설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발언한 영상이 흘러나갔다³¹⁾. 심지어 그가 한국인이라는 소문까지도 나돌았다³²⁾.

인터넷에서도 서포터들 사이에 나카타가 기미가요를 불렀는가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998년의 J리그 개막전을 비롯하여 기린 컵에서의 유고슬라비아와의 대전에서도 기미가요를 불렀다는 글이 올라오면, 그보다 이른 98년 3월 상순의 다이너스티 컵에서의 중국 전부터 불렀다는 댓글이 게재되기도 했다³³⁾.

한편 기미가요 제창 여부를 둘러싼 나카타 소동은 그의 강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 더욱 치열해진 측면도 있다. 앞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일본인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위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 한다. 자신의 의사를 갖고 더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휩쓸리게 되는

30) www.ogumen.com/al2/1078-875.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31)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html(2002년 5월 25일).

32) www.dd.ijj4u.or.jp/~poemer/5-30fr-kr.html. www.lycos.co.jp를 검색하면 일부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만, 현재 원문은 찾을 수 없다.

33) 가령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html(2002년 5월 25일)과 ss19.ibj.co.jp/talk/soccer/socc/socc9807-7.htm(2002년 5월 27일)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국민성, 무서워서 그러는지 왜 휩쓸릴 필요가 있는 건지, 잘 알 수 없다.

이 발언의 진의를 여기서 파헤칠 필요는 없다. 다만 '자기 의지'의 표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 발상과 나카타가 결부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해 두고 싶다³⁴⁾.

이런 나카타의 거침없는 언행은 일본 젊은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카타의 얼굴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꽤 좋은 얘기를 하잖아. 이런 남자가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건, 일본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인가?"고³⁵⁾. 이와는 다른 맥락의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앞에서 TV에 비친 고교생 나카타를 언급하면서 한 서포터는 나카타가 조금 무리하고 있거나 연예인의 인기 전략으로 '만들어진' 퍼포먼스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³⁶⁾. 어느 쪽이든 나카타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의사 표현이었기에 그 과장이 예사롭지 않게 펴져 나갔던 것이다.

2) '개인'과 '국가 대표'의 이중성

그러면 나카타 소동을 놓고 서포터를 포함한 다른 일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서포터들이 선수들에게 기미가요 제창을 요구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제시된다.

「자신을 위해」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대표」라는 점을 자각해 줬으면 한다. TV를 통해 적 서포터에게도 보여지느니 만큼 의연했으면 합니다.³⁷⁾

34) 본고의 논지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논란을 피해 사실상 이탈리아로 '망명'한 나카타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메이저 리그의 투수로 활약 중인 노모 히데오(野茂英雄)와 매우 닮았다. 노모는 "스포츠와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 최초의 일본 선수"였으며, '야큐(야구의 일본어 발음)'와 일부 매스컴의 공범관계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인터뷰나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한다. 히라이 하지메, 「노모 히데오 - 개척자인가 변절자인가」, 데이비드 앤드류스·스티브 잭슨 역음, 『스포츠 스타 - 13인의 아이콘으로 읽은 문학, 문화정치』, 이소출판사, 2002를 참조.

35) www.mkimpo.com/diary/1998/98-01-01.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36)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html(2002년 5월 25일).

게임의 전초전으로서 기미가요 제창을 파악하는 그들로서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어찌면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의 「대표」'라는 언설의 근저에는 '일본'이라는 '자기 동일성'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이질적인 것'의 배제라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아무리 픽션이든 가상 세계이든 간에 말이다.

국기나 국가를 단순히 「선수단의 깃발·노래이다」는 폭언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일본 대표」란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만약 희망대로 새 국기·국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상적으로 나라를 위해 깃발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고 하지는 않겠죠.³⁸⁾

다시 말하자면 나카타가 일본 축구의 국가 대표이듯 히노마루·기미가요는 국가·국가이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축구 선수일 수 있지만 대표 선수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나카타에게 기미가요 제창은 '국가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당연한 덕목으로 일종의 '후미에(踏み絵, 에도 시대에 천주교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 성화를 밟게 함)'로서 강요되었다고 봐야 한다. 나카타에 대해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떠돌거나, '비국민'³⁹⁾이라는 비난이 가해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전쟁의 기억을 짊어지는 것을 부정하면서도 이들의 정신에는 본능적으로 흐르고 있는 '총력전 체제'의 공감대가 감지된다고 한다면 너무 과민한 것일까.

그래서 나카타에게 가해진 비판의 핵심은 "자신이 동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미

37)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html(2002년 5월 25일). 이 사이트는 선수 개인의 사진을 첨가한 <국가 제창 랭킹>을 정해서 게재하고 있다.

38)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2.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젊은 세대 중에서는 "히노마루·기미가요의 의의에 대해서입니다만, 히노마루에 대해서는 단순한 식별기호, 기미가요에 대해서도 절대로 국가는 기미가요여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달라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저 개인으로서는 국가 그 자체가 시상식에서 연주되는 이외에 어떤 존재의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의견도 있다(www17.big.or.kr/~hiroku/hyoutree/pslg1985.html#2000).

39) www.geocities.co.jp/Colosseum/2770/kokka.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하지 못하고 기자에게 자신의 감각으로 국가를 언급했다"는 점에 있었다⁴⁰⁾. 표면적으로는 나카타 정도로 "나라를 짊어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감각으로' 국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는 제언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단'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일본인의 대표'로서 당연한 사고와 행동에 도전한 것이 나카타이며, 그는 일본 사회의 한 '금기'를 깨뜨린 일탈자로 취급된다.

이런 맥락을 정확히 읽어 내든 그렇지 못하든 우익 단체가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서포터들의 눈에 비친 기미가요 소동은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사건이었다. 대일본광심숙의 홈페이지를 본 후의 감상은 "왠지 무서운 곳이네. 모 축구 게시판보다도 더 무서워"라고 쓰고 있다⁴¹⁾. 기미가요 제창에 찬성하는 한 서포터의 글은 이런 착종된 인식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나카타가 기미가요를 부르지만 전혀 거기에 몰두하지 않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르겠다」고 정했다. 하지만 감정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의지와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싫다면 왜 부르는가? 보고 있으면서 이 쪽이 불편하다는 인상이었습니다.

기미가요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유고, 전인가? 그렇다면 질의서(우익단체의 질의서, 인용자) 일자와 앞뒤가 맞는다. 이 질의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싫은 느낌, 싫은 시대. 오한이 들 듯한 느낌.

그래도 정말 그럴까 싶습니다. 비교적 보통으로 자라온 21세 정도의 사람에게 기미가요는 하나의 노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⁴²⁾

그렇게 위험한 일이기에 서포터들에게는 기미가요를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부르는 나카타의 파격적인 언행이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다. 서포터들에게

40) www.miyazaki-nw.or.jp/soccer/htmfold/difficult4.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41) ss19.ibj.co.jp/talk/soccer/socc/socc9807-7.htm#10080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42) ss19.ibj.co.jp/talk/soccer/socc/socc9807-7.htm#11488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는 자신들만의 ‘문화 코드’로 윤색된 “하나의 노래에 지나지 않는” 기미가요를 자신들이 승배하는 축구 선수가 왜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아쉬움과 초조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면에는 순치되고 내재화된 의미로서의 히노마루·기미가요의 존재를 읽어낼 수 있다.

그로 인해 “애국심 넘치는 표정으로 기미가요를 부르고 있는” 미우라 가즈요시는 나카타와 비교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되어⁴³⁾, 나카타의 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글에 언급되고 있다. 사실 미우라도 J리그 선수 중에서 자기 표현이 강하기로 유명한 선수여서 황태자 부부의 결혼(1993년)에 대해 통상적인 황실에 대한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J리그 첫 해의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러하다⁴⁴⁾.

3) 나카타 소동의 결말이 남긴 것

국기·국가로서 히노마루·기미가요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나카타는 축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즉 그는 “기미가요”는 안 부른다 J리그 선수”로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판단해서 표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⁴⁵⁾. 그러던 와중에 나카타의 이탈리아 진출이 결정되었다. 방콕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은 그 결말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일본축구연맹은 나카타에게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몇 번이나 촉고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에 가 줘서 안도하고 있겠죠. 동시에 나카타 자신도 일본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일본 사회는 그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고, 반대로 그 자신이 일본 사회에 맞추면 자신의 선수 생활이 끝난다고 날카로운 센스를 지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⁴⁶⁾

43) 「大江健三郎への大いなる疑問」, 『スーパービジネスマン』 1999년 1월호. www.highbrow 634.net/musashi04c_main.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44) 앞의 논문, 「일본 축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나」, 225쪽.

45) www1.jca.apc.org/aml/9803/8090.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기타큐슈(北九州)의 시민단체가 1998년 3월 초·중학교 졸업식 때 배포한 유인물에 들어 있다.

46) www.ubenichi.co.jp/skiji/hashida/bababobo/bababobo5.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한 대학의 동아리에서도 나카타 소동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 비슷한 논조를 펴고 있다.

월드컵 전의 인터뷰 가운데 나카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자신은 일본을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카타는 나라를 위해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을 표시했다. 시합 전의 국가 제창 때도 ‘고개를 숙이고’ 개인승배·국위선양의 노래인 「기미가요」를 부르는 데 완강하게 저항했다. 양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혐박 때문에 기미가요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월드컵 기간 중에도, 머리를 흑발에서 금발로 물들여 일본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에 대해 그 나름의 반항을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세리에A에서의 활약으로 일본의 中田는 확실히 세계의 NAKATA가 되었다. 이제 그에게 국경은 상관없다.⁴⁷⁾

이탈리아로의 ‘망명’을 성취함으로써 나카타에게 국경은 상관없게 되었지만, 일본열도에 살아가도록 운명지워진 보통의 일본인은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사회의 현실은 나카타에게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즉 안팎의 공세에 밀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나카타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의심의 눈길이 줄곧 따라다니게 된다. 아래의 글이 그것이다.

나카타 히데토시는 일본을 짊어지고 있다는 의식이 전혀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된다) 본인에게 그런 의식이 있든 없든 나카타는 일본의 이미지로서 포착된다. 꽤 좋은 이미지로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나카타가 하는 일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일본의 이름을 높이는 쪽이지 욕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⁴⁸⁾

47) www.hoops.livedoor.com/~rituhyou/news2.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立命評論編集部’의 홈페이지이다.

이런 생각의 소유자에게는 일본이라는 국위 선양을 위한 '도구'로서의 나카타의 효용성이 일차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4. 서포터와 국기·국가법 제정과의 관련

1) '풍화'와 세대의 단절로서의 논의 구조

이제 J리그와 월드컵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양산된 서포터, 그리고 그들이 휘두르고 노래한 히노마루·기미가요가 현실에서의 국기·국가법과 어떤 연관을 맺게 되는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자.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소비'되는 히노마루·기미가요는 필연적으로 '일본'과 '일본인', 나아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것은 올바른 역사인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스포츠도 서로 절차탁마해서 최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므로, 그 『미지의 무엇』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국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힘으로는 세계를 무대로 싸운 사람만이 아는 『미지의 무엇』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어쨌든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크로아티아 전에서 만회하지 못하면 자마이카 전까지 눈사태 식으로 진다, 아마. 기미가요 안 부를래, 어이.

아무래도 일본의 일부 인간은 역사를 소홀히 한다. 기미가요는 일본이 개국 할 때 만들어진 곡으로 도쿠가와 200년의 태평에서 세계의 거친 파도 속으로 나아가는 일본인의 마인드로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전부 긍정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일본인으로서 태어나 일본어로 말하고 사고하고 있는 이상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두운 면을 포함해서 경의를 갖고 싶다.⁴⁹⁾

48) www.miyazaki-nw.or.jp/soccer/htmfold/difficult6.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49) www4.justnet.ne.jp/~jyl/diary/kimigayo/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이들에게는 말레이시아에서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에서 일본 대표를 응원하면서 히노마루를 흔드는 데 대해 현지 주민들이 왜 비판적인지는 알고 싶지도 않거나 알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상식인 일본의 침략과 그것을 상징하는 「히노마루」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지 못한 젊은이들의 불행이었다"⁵⁰⁾고 지적하는 것은 웬지 과녁을 빗나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 하나의 글. 50대 일본인 남자는 히노마루를 계양하는 사람은 '천황원리주의자'라는 의견에 대해, "월드컵과 올림픽에서 히노마루를 갖고 있는 서포터도 천황원리주의자가 된다. 올림픽 경기장에 가서 히노마루를 갖고 있는 젊은이에게 「당신은 천황원리주의자입니까?」라고 물어보시라. 「예에, 당신 누구?」라고 바로 취급당할 뿐이겠죠"라고 코웃음을 날린다⁵¹⁾. 승부는 뻔해 보인다.

투나잇Ⅱ라는 TV 심야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야마모토 신야(山本晋也)라는 영화감독이 말한 것입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의 월드컵 아시아 지구 예선의 대 이라크 전에서 히노마루를 휘두르며 낫폰, 낫폰이라 대합창하는 2만 명의 팬을 보고, 지금까지 히노마루 반대나 전후민주주의를 자신들은 외쳐왔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전부 패배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사회자인 이시카와 지로와 둘이서 젊은이들이 내셔널리즘에 동원되는지 아닌지 논의를 하는데, 곁에 있던 젊은 여성 출연자는 아저씨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논의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다.⁵²⁾

한 좌담회의 사회자는 이런 의견을 펼친다. "역시 세대가 달라서인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 대해 거부감은 그렇게 없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는 의식은 있지만, 스포츠에서도 어느 쪽을 응원하고 싶은 느낌이 있죠"⁵³⁾

50) homepage2.nifty.com/FSJ/tushin/029.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51) www.pref.hiroshima.jp/kyouiku/hotline/hiroba/hiroba14-2-2.htm#21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52) www2s.biglobe.ne.jp/~mmr/glocal/98/0101_zazankai.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53) www2s.biglobe.ne.jp/~mmr/glocal/98/0101_zazankai.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게다가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법제화에 비판적인 쪽의 모순적인 상황도 이들은 놓치지 않는다.『아사히 신문』이 월드컵의 공식 신문으로 계약한 것이 상업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⁵⁴⁾, 동 신문이 주최하는 '여름 고시엔(甲子園)'이라는 고교 야구의 전국 대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비난이 가해진다.

이 대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회식, 폐회식에는 주최자가 선수, 임원을 탈모시키고 관중도 기립시켜 「기미가요」의 합주에 맞춰 각 팀의 주장 손에 의해 「히노마루」의 게양, 강하가 행해집니다. <중략> 잘 생각해보면 이 대회의 주최자는 평소 지면에서 공립학교에서의 히노마루 기미가요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실시하고 타자에게는 비판하는 이런 모순에는 어떤 해명을 할까요.⁵⁵⁾

2) 국제적 관계로서의 히노마루·기미가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고교생 아들을 둔 주부는 "축구 중계를 보면 얼마나 기미가요가 국가로서 히노마루가 국기로서 정착한 것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⁵⁶⁾라고 지적한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널리 공유되고 있었으며, 두 상징물을 국가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암묵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국제시합이므로 양국의 국가를 부르게 됩니다. 나는 히노마루도 기미가요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양국에 경의를 표하여 기립하는 것은 예의. 하지만 조금 떨어진 장소에 있던 몇 명의 어린애들은 놀려 앉은 채. 형식만이 앞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만, 지금 일본은 이런 데서도 예의를 배우지 못하게 된

54) homepage2.nifty.com/FSJ/tushin/017.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55) www.gcommune.com/oibore/soccer.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56) www32.tok2.com/home/oodengaku/cgi-bin/yybbs.cgi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것이죠.⁵⁷⁾ 사실 국제 스포츠 행사에 국기·국가는 당연히 등장하게 마련이다. 서포터 자신들도 스스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던 바, "그들은 예의 바르게 기미가요에 뒤이은 크로아티아 국가 연주에도 기립했고, 끝나자 큰 박수를 보냈다"⁵⁸⁾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서포터의 좋은 매너, '국제적인 감각'은 보통의 젊은 세대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성 세대에게도 호감을 주게 된다. 가령 히노마루 기미가요 논쟁과 관련하여 찬성을 입장을 보냈던 『홋코쿠(北國) 신문』은, "작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의 젊은 서포터들이 시합 개시 전의 기미가요 연주 때 스탠드가 떠나가도록 큰소리로 입을 맞췄고, 상대 팀의 국가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좋은 매너가 평가를 받아 페어플레이 상 후보로 추천되었다"⁵⁹⁾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특히 국제적인 관계와 상식이라는 평가는 법제화의 향방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기미가요를 국가로 받아들인다는 어떤 일본인은 기미가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가 아니라 '불가사의'로 설명하면서 외국과의 비교라는 카드를 꺼집어낸다. 기미가요 반대자들에 그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올림픽 혹은 국제적인 이벤트 등에서 흘러나오는 기미가요를 무엇이라고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역사는 있었지만, 「나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미가요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과, 인정하는 다른 사람을 한데 묶어서 설명하고 있을까?⁶⁰⁾

57) homepage1.nifty.com/silver_boat/football04.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58) www.fcjapan.co.jp/KSL/story/368.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59) www.pressnet.or.kr/shimen/t19990323.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산케이 신문』의 경우도 이 시기에 '애국심'을 테마로 한 각종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60) www.miyazaki-nw.or.jp/soccer/htmfold/difficult4.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5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궁금하다는 차원을 넘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밝히라고 강요할 정도의 긴장감의 정체가 무엇인가는 본고의 과제를 벗어난 것이지만, 1990년대 말의 우경화 드라이브와 관련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국기·국가법의 제정과 축구

이상에서 확인한 축구 경기장에서의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복권은 전후 기회 있을 때마다 국기·국가법을 추진하려다 실패를 거듭했던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가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로 비치지 않았을까. 그들이 히노마루·기미가요가 국기·국가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국민의 통념, 사회 관습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 있었고, 그 ‘사회적 정착’을 위해 학교의 의식을 비롯한 각종의 상징의례에 도입하는 데 앞장서 왔다⁶¹⁾. 서포터들의 표현대로라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니 만큼, 이는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부측의 명분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법제화가 성취된다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해진다.

‘문화기호론’에서는 “스포츠 등의 게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의 의미 경험은 그 장에서의 플레이가 만들어내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⁶²⁾. 그리고 “축구의 서포터가 히노마루를 바디 페인팅 하고 열광하는 일과, 학교의 국기 게양의 의식화를 통해 「국민국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같은 심벌이 개입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경험”이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자는 관객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상 속에서 기껏 「히노마루 축구 팀」의 일원이 되는 정도의 상징적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후자는 「국민국가」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습성(에토스)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주

61) 中西信太郎, 「はためく日の丸のジャパネスク」, 『世界』 1999년 6월호, 岩波書店, 103쪽.

62) 이시다 히데타카(石田英敬) 도쿄대학 교수가 1999년 8월 3일 참의원 「국기·국가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행한 참고인 진술. gamp.c.u-tokyo.ac.jp/~nulptyx/against.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마찬가지.

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의 역사와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양자가 뒤섞여 수준이 혼란스러울 때 스포츠와 이벤트의 「정치 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민당이 국기·국가법을 추진하게 된 정치적 합의는 위의 분석에서 확인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1999년의 여름, 국기·국가법은 자위대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주변사태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은 20세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했다.

나오며

이제 ‘가벼워진’ 히노마루·기미가요와 내셔널리즘의 관련성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일본의 논조는 대부분 내셔널리즘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깃발을 휘두르고 노래를 불렀다고 본다. “90분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히노마루를 흔들고 있던 사람도 지극히 보통의 국제 감각을 지닌 건전한 시민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라는 ‘90분의 내셔널리즘’론도 있다⁶³⁾. 또 내셔널리즘의 완충제(ガス抜き)론도 있어, “스포츠인 한에는 해가 없으며, 거기서 놀고 있는 편이 내셔널리즘의 완충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다⁶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다”고 하면서, 축구와 나카타가 예로 등장하기도 한다.

축구 일본 대표를 응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큰소리로 기미가요를 부르고 히노마루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진보파를 가끔 보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국립 경기장 안에 한정된 얘기이다. 과거 나카타 히데토시 선수가 대표전을 앞두고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63) www.yung-web.com/essey/national.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4일).

64) www2s.biglobe.ne.jp/~mmr/glocal/98/0101_zazankai.htm에서 인용(2002년 5월 27일).

들어 민족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이 퍼졌을 때, 그들 대부분은 나카타 선수의 내면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도의 기량을 지니고 있다. 걱정할 일은 아니다.⁶⁵⁾

하지만 국기·국가의 법제화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혹자는 “정치적인 의미를 띠게 됨으로써 히노마루·기미가요가 소원해질지 모른다. 역으로 젊은이들이 내셔널리스틱하게 되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한다⁶⁶⁾.

타자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히노마루·기미가요의 복권은 현재까지는 일본이라는 틀 내에서만 작동하는 동일화의 메커니즘으로 보인다. 홀리건과 같은 노골적인 폭력으로 비화될 조짐도 현재로서는 감지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재해석한 히노마루·기미가요의 경계선과 그 내실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히노마루를 휘두를 정도의 귀속의식과 국가의식을 바탕으로 성립할 것 같은 국가통합과 전쟁, 일체화야말로 현재의 글로벌 국가로서는 「강한 통합」이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갈 수밖에 없다⁶⁷⁾. 서포터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우리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1998년 6월 1일 연구소로 발족하였습니다. 탈냉 전과 지구촌화시대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권과 평화' 교육 및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소 발족 이전부터 성공회대학교에서는 인권평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 평화 관련 강좌를 신설하였으며 여러 번의 심포지엄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권과 평화'를 대학 특성화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 연구 활동에 인권과 평화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권평화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권평화센터는 지구촌화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변화하는 인권과 평화의 개념을 재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과 평화 관련 연구 활동과 조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며, 각종 학술 행사 개최, 인권과 평화 관련 저널 발간, 인권과 평화 관련 단체의 네트워킹 구축, 각종 국제 교류 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인권과 평화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인 1998년에 한국대학 최초로 태어났으며, 인권평화 기초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이재정 총장이 겸직 하였습니다. 1999년 3월에 조희연 교수(사회과학부)가 2대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99년 9월, 학교 기구개편에 따라 인권평화센터로 재출발하였습니다. 2000년 4월에는 3대 소장에 김동춘 교수(사회과학부)가 취임하였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태어난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 지구촌화 정보화 시대의 보편적 이념으로서 인권과 평화 연구 및 교육
- ▶ 성공회대학의 이념인 열린 나눔 섬김의 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교회의 발전에 기여
- ▶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각종 캠페인 전개
- ▶ 인권과 평화에 기초한 대안적인 대학교육 실시
- ▶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 ▶ 인권 평화의 가치와 전공교육 결합
- ▶ 지구촌화 시대의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교양 교육 실시
- ▶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 인권과 평화 관련 단체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65) 安部誠, 「解雇願望を捨て去って、労働運動の明るい兆候をつかもう」, ユニオン・ニュース「ファイティングポーズ」62号(2001년 2월 1일). www.ops.dti.ne.jp/~grapevin/union/union0006.html에서 인용(2002년 5월 29일).

66) 앞의 기사, 『아사히 신문』 1999년 11월 26일 석간.

67) 앞의 논문, 「はためく日の丸のジャパネスク」, 106쪽.

“중국의 사회주의와 인권 - 형성 가능한 인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시론”을 읽고

李旭淵
(서강대 중국문화전공)

조경란 선생님의 발표는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회피하면서 항용 내세우는 주권론이나 경제 발전론 등이 지니는 허구성을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여, “중국에서 인권 개념의 가능한 형태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인권 관념이 박약하게 된 원인을 근대 이후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추출해내고, 향후 “중국적 인권 관념의 형성 가능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권문제를 중국과 외부, 주로는 서구와 관련된 국제 질서 속에서 점검하기보다는 중국 근현대사의 경험이라는 내재적 맥 속에서 고려하는 점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중국 인권 문제를 담론 차원이 아니라 현실 속 인간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바라볼 경우, 그러한 내재적 시각이 더없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1. 사회주의 경험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문은 중국에서 근대 이후 ‘생민’ ‘백성’들이 국민으로 전환됨으로써, “집단적 국민, 국가의 성립은 그 내부에서 개인의 자유, 평등을 원리로 하는 제도서의 민주주의를 길러낼 수 없었으며, 그보다는 그것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향했다는 溝川雄 :”의 “결론”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백성을 집단적 국민으로 재편성하는 일이 비단 근대 초기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기 이후의 역사시기까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인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보는 관점으로 파악됩니다. 이 관점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중국 근현대사를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은 근대 국가주의라는 레벨 속에서 보편화, 무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자면, 중국의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설명틀, 중국 인권의 문제를 근대 국가주의 - 특히 그것의 가장 열악한 형태로 발현되곤 하는 제3세계 국가주의 - 라는 지평 속에서 해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는 한국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적 위협과 더불어 근대가 진행되고 이후 전제적 국민국가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많은 제3세계 국가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시야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 근현대 <국민국가와 인권>이라는 접근법 못지 않게 <중국 사회주의와 인권>이라는 접근법도 동시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이 근대 인권 문제를 어떻게 굴절시키고 왜곡, 혹은 발전시켰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물론 溝川의 시각대로 ‘공’과 ‘개인’의 이항대립을 기초로 한 개인의 실종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전통 사상과 중국 사회주의는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 경험, 특히 모택동 시대의 역사 경험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중국 인

권 문제를 회고할 때, 국민 레벨의 보편 인권뿐만 아니라, 민중적 레벨, 계급적, 성별 레벨에서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과 인권의 문제를 사고하는 일도 필요해 보이고, 그럴 때 모택동 시대의 인권의 양상과 그 이후의 인권 양상의 변화를 면밀히 따져보는 일이 의미 있는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보편적으로 보자면, 중국 사회주의 역사 경험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근대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근대 민주주의를 되비추어 보는 일이 될 것이고, 중국적 지평에서 보자면 모택동 시대와 시장 경제 시대 중국 인권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인권 개념의 형성을 위한 방법 및 전망과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는 중국에서 인권 개념의 형성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同'의 원리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라든가 "공공 영역에 비견될 만한 중간단체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강조, 국가와 개인의 "공성 회복", 동아시아 연대의 회복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해 대체적으로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권 개념의 형성을 전망할 때,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국의 시장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인권 신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확대가 발표문의 지적대로 이기적이고 사적 인간들을 배출하는 것이 현재 중국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컨대 향후 중국 인권 개념의 형성을 위해서는 중국 사회의 시장화라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언급이 보충되었으면 합니다.

3. 동아시아적 전망과 관련하여

발표문에서 "중국 인권 문제는 동아시아의 상호연관성이 날로 긴밀해져가고 있는 지금 중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국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아시아적 전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중국의 인권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터이고,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인권 문제를 사고하는 데 있어서도 두루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아시아적 시각과 전망이 유용하느냐의 여부, 유효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발표문에서는 인권문제를 위한 비판과 연대, 그리고 중국 역사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 호의적인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 등이 동아시아적 전망으로 인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연대와 우호적인 동아시아 국제환경의 조성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저는 인권 문제에 있어 동아시아적 전망이 보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우호적 국제 관계를 보다 근본에서 추동하는 동아시아 문명의 인권관, 동아시아의 전통과 근현대의 역사적 경험을 총결한 바탕 위에서 서구 근대 인권관을 지양한 동아시아적 인권에 대한 시각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래의 주권 차원의 인권관을 넘어서되 서구 근대적 인권관의 전일적 관철을 제어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문명권의 삶의 원리를 존중하는 동아시아 문명 차원의 인권관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다. 중국에서 법률적 제도화를 통한 개인 권리의 보장이 전통적 향촌 공동체의 작동 원리와 만나면서 균열이 발생하는 지점을 여실히 포착해 낸 張藝謀의 영화 『귀주 이야기』에서 '귀주'가 느끼는 곤혹은 기실 중국 일반 민중들의 보편적 곤혹이자 상당 정도 동아시아 민중들의 보편적 곤혹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귀주의 곤혹을 보듬어 안는 동아시아의 인권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철학적 시론'의 지평에서 동아시아 인권의 문제를 사고할 경우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문명 차원의 인권관을 모색하는 일이 매우 지난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원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공감이 없이는 동아시아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국가주의의 질곡에서, 주권이냐 인권이냐의 이분론에서 구출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대와 교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단적 인권? - 문성원의 「개인적 인권과 집단적 인권」을 읽고 -

장은주 (영산대/철학)

1. '자유주의'에 그 발생적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대립항이 될 수도 있는 인권 이념을,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와는 아주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지구상의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어떤 종류의 '자유주의'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고 제대로 '철학적으로' (단순히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이해하고 평가하고 나아가 그 이해와 평가를 남에게 설득해 내는 일은 어쩌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일지도 모른다. 유일하게 자기 당 이름에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현재의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가장 일리버럴한 청강정책을 갖고 있는 이 '바나나 공화국'에서는, 그러나 예컨대 북한 난민들의 귀순 소식을 전할 때 모든 언론들이 아무런 서성임 없이 '드디어 자유의 품에 안기다'라는 식의 수사를 사용하는 이 '자유'의 나라에서는, 또 그러나 그 '자유'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정리해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매맞고 무시당하면서도 자기 몸뚱어리를 팔 자유를 의미하는 이 야만의 땅에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라는 정치적 이념부터 그 색깔이 너무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비록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실정적 보편성을 확보했다고는 하나 예컨대 아직도 '중국 식의 인권 이해'가 노골적인 인권 탄압의 명분으로 내세워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그것이 심각하고 진지하게 토론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전혀 보편적이지 않는 인권 이념을, 그런 자유주의와 연관하여 비판적으로 해명해보겠다는 시도는 차라리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할 것이다. 문성원의 글은 바로 그런 시도의 하나다.

나는 "인권 논의에서 흔히 간파하기 쉬운 면을 보완해 보겠다"는 문성원의 의도, "특히 원자론적 사회관에 입각한 자유주의 인권관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럼으로써 인권의 운동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 보겠다"는 그의 의도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그 동안 문성원이 아주 신랄하게 인권 이념을 (물론 그가 "서구의 근대 질서를 확산하고 그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 아주 특별한 종류의 인권 이념을 두고서 인 것 같지만) 조롱하던 것을 자못 못마땅하게 여기던 나로서는 그의 참된 의도가 "'인권 운동'의 바람직한 전개"를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심지어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문성원의 핵심은 인권 이념의 찬양에 있지 않다. 문성원에게 인권 이념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권의 규범적 방향성이 '배제의 배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도 인권이 "배제와 억압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문성원이 이 글에서 '집단적 인권'을 도입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원자론적 '자유주의적' 인권 이념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때로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문성원의 논의를 평온하게 다 따라갈 수 없다. 예컨대 '배제의 배제와 평등의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 이념을 두고 문성원이 인권은 바로 그 '배제의 배제와 평등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교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나로서는 하나의 이론적 스캔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서만 보자면, 나는 ‘집단적 인권’에 관한 문성원의 입론은 ‘사적 자율과 공적 자율의 동근원성’(하버마스)에 대한 물이해의 결과로 ‘민주주의적 참여’에 관한 공화주의적 문제들을 ‘진정성’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문제들과 혼동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뿐이다. 인권 이념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해관계가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 또는 공공선과 갈등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지극히 민감한 ‘배제의 배제’에 대한 감수성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문성원의 집단적 인권론은 자신의 규범적 지향성과 관련하여서도 모순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무척 위험하기까지 하다. 인권의 보편성을 옹호하는 나로서는 그런 모순과 위험을 지적해 주는 일이 무례로 받아들여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성원도 ‘인권 운동’의 바람직한 전개에 관심을 갖고 있다지 않은가?

2. 월드컵이 한창이다. 내 출근길 어느 한 모퉁이에 있던 노점상이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 가끔씩 차를 세워 한 잔하곤 하던 맛이 일품인 커피도 그리워서이지만, 월드컵이랍시고 노점상을 단속하는 이 노벨평화상 수상국의 현실이 한심해서 아침마다 혀를 차곤 한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노점상이기에 그 동안 벌어둔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달여 동안 생계를 막막해 해야 할 그 노점상 노부부도 과연 우리 한국팀의 16강 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는 ‘공동선’의 이름으로 그 갈등을 없는 것이라고 꾸미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체주의 사회다. 기껏해야 애매한 ‘포스트-파시스트 사회’다. 하기야 월드컵을 치른답시고 ‘강제’ 차량 2부제를 실시해도 누구하나 불멘소리 한 번 하지 않는 사회 아닌가?

어쨌거나 이 맥락에서 우리는 ‘개인’의 권리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한 것은 문성원이 강조하는 것처럼 개인이 사회에 우선한다고 보는 원자론적 관점의 어떤 형이상학적 진리에 대한 현신 때문이 아니라 문성원이 인권과는 다른 차원의 규범적 지향인 것처럼 (잘못) 강조하는 ‘배제의 배제와 평등 실현’의 요구 때문이다. 인권의 규범적 요구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를 평등하게 존중하라는 것이다. 그 어떤 ‘국가’, ‘집단’, ‘전체’, ‘공동체’도 그런 요구를 충족할 때에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성원이 인권이 개인을 구체적인 인간 집단 속의 개인들이 아니라 추상적인 보편으로서의 개인을 취급하면서 그것을 조롱할 때, 사실 그는 이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그것과 갈등할 수 있는 개인의 이해관계의 무시, 공동체의 이름으로 당할 수 있는 개인의 배제, 그것을 막자는 것이 ‘추상적 개인’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때때로 또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이지만 또한 모두 낯선 남이기도 하다는 인식) ‘배제의 배제’를 지향하는 인권 이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문성원은 인권 이념이 오히려 특정한 배제를 행할 수 있다고 애써 공박하고 있으니, 나로서는 문성원의 엉킨 인식의 실태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도무지 어지럽기만 하다.

아, 물론 지겨운 ‘자유주의’의 문제가 있긴 있다. 다른 문화적-형이상학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자연법적 권리니 ‘천부인권’이니 하는 것을 주장하는 천박하게 기독교적-서양중심적인 사람들이 한심하기는 하다. 사적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맨체스터-리버풀리즘의 후예들도 가증스럽기는 하다. 그런 식의 ‘자유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 내가 문성원과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자유주의’의 원조인 서양에서도 ‘Which Liberalism?’은 중요한 문제다. 만약 우리가 인권의 문제를 규범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문제 삼는다면, ‘자유주의’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복잡한 사태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자연권 개념도 우리가 그 규범적 동기의 절실함을 공감할 수 있는 한 그 형이상학적 장치의 맥없음은 옆으로 밀쳐 둘 수 있어야 한다. ‘자연권’이든 ‘인내천’이든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보편적인 규범적 동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저런 종류의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우연하게도 자유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처음 강조하기 시작했던,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인’ 가치들은 옹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들은 ‘자유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3. 권리의 본디 집단적인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성원처럼 “개체의 권리”는 그 집단적 권리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개체의 권리가 집단적인 것은 그 어떤 개체의 권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한에서 민주적-시민적 실천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인의 권리의 집단성, 공동체성은 말하자면 그 권리의 사회-정치적 본성과 연관되어 있다. 권리의 사람들이 상호존중, 상호인정하는 것이며 그런 상호존중과 상호인정은 분명한 사회적 기제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권리의 담지자, 그 권리의 수취인은 개인이다. 이런 개인의 권리의 개인들이 공동체적으로 민주적-시민적 실천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율이 전제되지 않은 공동체적 실천은 ‘동원’이지 자유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표현대로 ‘사적 자율’과 ‘공적 자율’은 동근원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성원은 권리의 그와 같은 사회-정치적 본성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권리의 담지자와 관련하여서도 ‘집단적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테일러가 이야기하는 식의 ‘진정성’의 단위로서의 ‘집단’ 전체의 생존에 대한 주창에서나 나옴직하다.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에서 소수 민족인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집단’으로서 누리는 권리에 관한 주장에서처럼 말이다. 그러나 두 차원은 정말 많이 다르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특별한> 소수민족인 ‘조선족’은 자식을 두 명 낳아 길러도 된다는 ‘특권’을 누린다. 아마 ‘집단적 권리’의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다. 이 경우에도 귀속 집단에 대한 존중에서 오는 개인이 누리도록 보장된 그러나 그 성격이 집단적인 권리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보편적 인권’과 관련해서 ‘집단적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외설적이거나 아니면 넌센스다. 인권이 인권인 것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더 공동체주의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가 ‘인간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 그의 구체적인 집단적 귀속성과는 상관없이 그 이해관계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공동체’는 사실상 무한하고, 인권 이념은 그 무한하고 영원히 개방적인 공동체 말고 그 어떤 단위의 ‘집단’도 인간 존엄성의 준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규범적 지향을 표현하고 있다.

권리의 집단적 성격과 각 집단의 특수한 조건을 인정하고 배려하기 위해 ‘집단적 인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인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단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다. 예컨대 북한의 특수한 조건의 고려 없이 북한 주민 전체의 인권 상황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외부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이 자칫 ‘내정 간섭’으로 비쳐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점은 결코 ‘집단적 인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도대체 ‘북한 정권’이 ‘집단적 인권’을 누릴 담지자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북한 정권’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과 배제는 우리들의 규범적 측수에 전혀 포착되지 못하게 된다. 수

많은 정치적 이단자들, 체제의 낙오자들, 북한 식 생존 게임에서 전 사람들, 또는 예컨대 동성애자들, 문화적-종교적 소수자들 등 이 모든 소수 개개인들의 인권은 문성원이 이야기하는 ‘집단적 인권’의 절대적 타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배제의 배제’라는 문성원 자신의 규범적 지향과도 완전히 모순적이다.

물론 그는 각주 20과 22에서 애써 자신의 발상의 위험성을 완화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내부의 지지’니 ‘다수 민중’이니 ‘집단 내부의 운동’과 같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잣대로 ‘집단적 인권’의 위험성을 가릴 수는 없다. 90퍼센트의 국민의 지지를 얻었던 유신헌법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그래서 부당한 내정간섭이라는 말인가? 유신헌법에 대한 <절대 다수 민중의 지지>가 영터리인 것은 그것이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단적 인권’의 발상으로는 결코 그런 영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도대체 문성원은 무엇을 위해 ‘집단적 인권’을 고집하고 있다는 말인가?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 : 코소보 딜레마를 중심으로

박 영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미완의 초고이므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은 세계화된 자본과 국민국가 속의 정치의 간극, 세계화된 부르주아지와 영토국가 속의 시민의 간극을 놓음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의 보편화 기획이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질서를 민주적으로 조형하는 프로젝트로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그 기획은 코소보 전쟁의 딜레마 속에서 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 글에서는 1) 코소보 전쟁의 딜레마에서 드러난 현 인권정치의 딜레마를 도착증과 편집증의 딜레마로 서술하고 2) 인권정치의 도착증을 넘어서는 길로서 세계시민법의 기획을 검토하고, 아울러 3) 이 기획이 주권의 도착증의 극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화 시대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세계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장 : 세계화와 코소보 딜레마 : 인권의 도착증과 편집증

근대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상이한 전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근대인의 자유라고 불리는 사적 자율성, 인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인의 자유라고 불리는 공적 자율성, 평등, 국민주권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공화주의적 전통이다. 이 두 전통이 각기 강조하는 정치 이상은 근대 민주주의의 불가분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입헌 민주주의, 민주적 입헌국가 등등의 용어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이 결코 행복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 사상사를 들이켜보면 양자 사이의 관계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로크 아래의 자유주의 전통과 루소 아래의 공화주의적 전통이 여러 측면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법의 저자로서의 공적 시민의 역할보다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의 담지자로서의 사적 시민의 역할을 중시했으며, 공적 자율성보다는 사적 자율성의 보호에 관심을 집중했으며, 민주주의보다는 입헌주의를 선호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보다는 인권의 원리를 우선시했다. 인권은 국민주권의 집합적 의지가 개인적 자유의 영역을 침해하는 사태를 막아주는 보호장벽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편향은 공적 자율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유주의가 우선시하는 사적 자율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사실 시민들이 공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적 자율성의 사용 가치는 보장되기 어렵다. 오늘의 맥락에서 이 문제점은 소수민족과 소수문화의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잘 드러난다. 만약 자아가 자율적으로 추구하려는 삶의 목표가 공동체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없다면,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개인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삶의 형식, 문화적 조건까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 자아 개념에서 출발하는 자유주의의 법적 일반성 속에선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사라지며,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사적 자율성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선 제약을 받는다.

공화주의적 전통은 자유주의의 이런 측면들을 비판한다. 공화주의적 전통에서는 인권보다 국민주권, 사적 자율성보다는 공적 자율성을 우선시하면서 공동의 정치적 실천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공동성을 정치 이전의 문화적 인륜적 동질성을 환원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게 정치참여는 공동체 소속감의 표현이고, 정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윤리적 자기이해의 표현이고 실현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자유주의에선 법의 추상적 의미론적 일반성으로 환원되는데 반해, 공화주의에서는 미리 주어져 있는 인륜적인 공동성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법적 인격체로서의 시민의 사적 자율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적 자율성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한, 시민의 공적 자율성도 위험에 빠진다. 예컨대 정치적 공동실천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면 공동실천은 공적 자율성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대정치의 두 이상이면서 동시에 예리한 대립각을 세웠던 인권과 민주주의는 일종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 긴장관계가 근대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의 역동적 운동을 추진해온 동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인권의 이상은 민주적 원리가 관철되던 한정된 경계선을 넘어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민주주의는 그런 자유주의적 확장의 위험에 경고를 하곤 했다. 동시에 인권의 이상은 민주적 자결의 원리가 민족 자결의 원리로 전환되는 경향에 대해 경고음을 내곤 했다. 그러나 양자의 생산적 긴장관계가 무너질 때엔 대단히 불행한 정치적 사태가 발생하곤 했다. 인권과 인민주권의 원리가 긴장 속에서 서로를 지원하지 못하고 자립화될 때 인권과 주권은 자기파괴의 길을 걷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긴장은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계화 과정이 진척되면서 이 긴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의 세계화 과정의 구조적 특징 중의 하나는 시장은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고 있지만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 속에 머물고 있고, 부르주아지는 세계화되지만 시민은 여전히 영토국가에 갇혀 있으며, 자본은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지만 노동력의 이동은 더욱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인권과 국민주권도 이 구조적 갭의 분할선을 따라 상이한 정치적 공간 속으로 배치되고 있다. 즉 인권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화되고 있는데 반해 인민주권은 여전히 국민국가적 틀 속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종족적 지역적 파편화의 과정 속에서 해체 및 축소의 과정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과 국민주권의 긴장이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과 국민주권이 초국가적 차원과 국민국가적 차원으로 분할배치되면서 양자는 상호합축의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자립화되었다. 이것은 양쪽 모두가 기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그러진 두 원리 사이에 외적 대립이 발생하는 사태를 낳았다. 코소보 전쟁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보통 코소보 전쟁은 두 스캔들의 충돌로 간주된다.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해 밀로세비치가 벌인 대대적인 인종박해는 분명 스캔들이다. 그러나 이 재앙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나토의 유고공습 역시 주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스캔들이고, 양자의 충돌이 우리에게 딜레마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와 주권침해가 장군 명군 식으로 충돌한 것 자체를 딜레마로 칭하기엔 뭔가 망설여지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된 국제법의 위반을 스캔들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단을 뒤로 미루더라도 코소보 전쟁은 여전히 우리에게 딜레마로 나타난다. 그

러나 이번에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편집증과 도착증 사이의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세르비아 민족주의의 대변자로 여기는 밀로세비치의 정치적 행각은 분명 편집증의 징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편집증이 초래한 결과는 명백히 반인도적 범죄이다. 아마도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기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귀를 쫓는 나토 폭격기의 공습을 아무런 도덕적 의혹 없이 반겼던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의식했던 토니 블레어는 유고공습이 석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도덕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리높이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 곤혹을 풀어주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뿐이었다. 슬라보예 지젝은 토니 블레어의 문제점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과시하기 위하여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구하려 뛰어 들어가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비꼬았다. 서방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밀로세비치라는 괴물을 공격하느라 부산을 떨었고, 또 불쌍한 알바니아계 주민들에게 서방의 도덕적 감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무기력한 희생양의 역할만 강요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코소보 전쟁의 딜레마를 설명하진 못한다. 그 전쟁이 우리에게 딜레마로 경험되는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공습을 행한 것이 다름 아니라 도착증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캉류의 정신분석적 용법에 따르면 도착증은 단순히 성적 변태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도착의 정의는 자신을 큰타자의 도구로 삼는다는데 있다. 히스테리의 특징이 큰타자의 욕망에 대한 끝없는 의심에 있는데 반해 도착증의 특징은 큰타자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뿐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라고 확신한다는 데 있다. 클린턴은 몰라도 블레어는 인권의 도덕적 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신했고, 나아가 자신이 그 명령의 충실했던 집행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설령 실제로 그럴진 않았다 하더라도, 공습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는 그런 확신과 의식을 요구했다. 여기서 생기는 도덕과 폭력의 일치, 인권보호라는 목적과 가장 기본적 인권을 해칠 전쟁이라는 수단 사이의 단락에서 우리는 도착의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왜 코소보 전쟁이 우리에게 딜레마인지가 분명해졌다. 그 전쟁은 멀쩡한 우리들에게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는 도착증과 편집증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딜레마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마치 정신분석에서 신경증, 도착증 등이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다양한 범주적 태도들이듯이 코소보 딜레마도 단순히 발칸이란 특수한 지역에서 우연히 등장한 병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밀로세비치가 사라진다고 해서, 블레어처럼 도덕적 대의에 흥분하는 순진한 지도자나 혹은 도덕적 대의를 정치에 잘 사용하는 영악한 정치지도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딜레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단순히 미국의 패권적 이익이나 밀로세비치의 자기파괴적 세르비아 민족주의 때문에 이 딜레마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패권적 이익추구와 세르비아 민족주의 야망 자체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는 그런 전례가 되풀이되어선 안된다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코소보 딜레마가 우연한 사고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직까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일정 기간 동안은 구조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럼 왜 이 딜레마가 발생한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역시 세계화의 구조적 갑의 결과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논의맥락에서 그 구조적 갑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권과 주권의 긴장이 자리잡고 있던 도덕/법/정치의 매개연관이 분해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관은 지금까지는 국민국가적 틀 안에서 형성되었다. 국민국가의 법적 공간 안에서 도덕적 내용의 인권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되어 기본권이라는 모습 속

에서 보호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근거지워질 수 있는 인권이 기본권이라는 법적 형태 속에서 보호되었으며, 그 기본권은 민주적 정치를 통해 제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도덕/법/정치의 매개연관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권도 단순히 집합적인 정치적 열정에 좌우되는 순수 정치권력이 아니라 법에 매개되어 민주적 입법권이라는 형태로 순치되어 있었다. 주권이 이렇게 입법권이라는 형태를 취할 때 비로소 주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서 민주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요컨대 근대 민주주의에서 인권과 주권은 이런 식으로 각기 법에 매개되어 있었으며, 또 법을 통해 서로 매개되어 있었다. 사실 이것이 입헌 민주주의나 민주적 입헌국가의 특징적 내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 과정에서 파괴된 것은 바로 이 매개연관이었다. 세계화 과정과 함께 한편 인권은 시장의 세계화의 경로를 앞서 인도하거나 뒤 따라 갔으며, 다른 한편 주권은 종족적 민족주의 방향으로 파편화되는 경향이 발생했다. 이 역설적 메가 트렌드 속에서, 한편으로 인권은 그것이 배태되어 있던 국민국가적 법체계의 매개로부터 벗어나 초국가적인 공간에서 도덕적 권리로 자립화하고, 다른 한편 주권 역시 국민국가적 법체계와의 매개고리를 상실하면서 민주적 입법권이라는 의미보다는 민족의 실존적 자기주장으로 이해되고, 이와 함께 민주적 테모스가 아니라 종족주의적 에스노스가 주권의 동질성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우려할만한 양상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법을 통한 매개가 사라지자 인권과 주권은 세계화된 도덕적 인권과 종족적 민족주의의 자기실현 수단으로 전도된 정치적 주권으로 양분화되고 자립화되어, 원래 그 개념이 갖고 있던 자유의 보장이란 의미와는 정반대의 결과들을 가져왔다. 요컨대, 인권이 법적 매개를 벗어나 초국가적 공간에서 도덕적 권리로 자립화되어 세계정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인권을 위한 공습이라는 도착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주권의 정치가 법의 매개를 벗어나 종족적 민족주의의 파괴적 열정에 사로잡힌 것이 밀로세비치의 편집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법을 정지시키고 부정하는 두 가지 병리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사라진 곳에서 도덕의 정치와 열정의 정치 사이에 폭력적 단락이 발생한 것이고, 이 폭력 속에서 도덕과 열정이 합치된 셈이다.

2 절: 인권정치의 도착증과 세계시민법

그럼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이 딜레마가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해결 방향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길은 3 가지 정도인 듯하다. 첫째는 간단히 국제법적 상태를 복구하는 길이고, 둘째는 현실 주의적 체념 속에서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혜개모니를 인정하는 길, 즉 불만을 억누르고 미국을 세계적 규모의 현실적 리바이어던으로 받아들이는 길이고, 세 번째는 억눌러진 불만 속에 담겨 있는 규범적 함축을 세계시민법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첫 번째 대안은 즉각 떠오르는 대안이긴 하지만, 오늘의 세계적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가 가져온 구조적 갱은 베스트팔렌 조약 아래 국제법이라는 건축물이 지금까지 서 있던 지반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 게다가 유고공습은 무너진 베스트팔렌 체제에 확인사살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토 전투기가 베오그라드의 유서 깊은 아름다운 다리를 폭격했을 때, 국제법

으로 되돌아갈 다리까지 폭격한 것이다. 물론 국제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작동하겠지만, 그 위상과 기능은 변화되고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국제법을 통해 규제되는 국제관계의 기본적 특징은 약한 법률과 강한 군사력의 조합이라고 묘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초강대국의 의지가 국제관계의 가장 핵심 변수가 된다. 약한 법적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힘의 관계를 규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 나라한 지배관계를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베일의 역할로 끝날 뿐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국제법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은 한 거풀만 벗겨보면 초강대국 미국을 비롯 법적인 리바이어던은 아니지만 사실적 리바이어던으로 인정하자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솔직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마도 두 번째 대안일 것이다.

자연상태에서는 힘의 평등 내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평등이 없을 때 질서가 가능하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마치 힘의 절대적 우위를 통해 자연상태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또 미국 자신도 그것을 의도했다. 이 절대적 힘의 우산 아래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두 번째 현실주의적 대안의 바탕에 깔린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도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우선 아무리 국제관계의 속성이 그렇다지만 국제관계를 완전히 힘의 관계에 맡긴다는 것은, 세계적 상호의 존 관계가 조밀해지는 세계화의 시대에 규범적으로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감속 속의 평화일지라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도 된다면 규범적 거부감을 표시하는 내면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다지 가능성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부시가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 군사력에 의한 질서유지의 정책을 생각해보자. 이 정책은 그 존재조건인 군사력 강화에 대한 강박관념을 부추길 뿐이다. 즉 그 정책은 우리의 국경 안으로 총알 한방도 들어와선 안된다는 병적인 방위 강박증을 초래할 것이며, 실제로 부시의 미사일 방어정책이 바로 이런 병적 집착의 산물이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죽음의 평등이 무너질 때 자연적 리바이어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적 리아비어던을 자처하는 초강대국은 죽음의 불평등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공격받을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차단시켜야 하는 것이다. 물론 9. 11 테러가 보여주었듯이 이런 병적 집착의 목표는 도달될 수 없다. 그러나 방위 강박증에 걸린 사람에게 9. 11 테러는 전망의 교체를 통해 이 강박증에서 벗어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뿐이다. 이렇게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종착점은 그나마 군사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는 평화체제가 아니라 어디서도 피하기 힘든 테러의 불안체제일 것이다. 이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자비로운 혜개몬의 이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클린턴이 부시와 다르다면 무자비한 혜개몬과 자비로운 혜개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운 혜개몬의 정책은 다름 아니라 코소보 딜레마의 한 축인 도착증의 진앙지이기도 하다.

위의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이상의 비판적 검토를 고려할 때 마지막 대안인 세계시민법 기획을 진지하게 다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법의 구상은 칸트의 영구평화론 이래 국제관계의 유토피아로만 남아 있었다. 과연 현재의 세계화의 국면이 이 기획에 현실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지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의 중심논제도 그것의 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 기획의 필요성과 그것이 함축하는 규범적 전망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일견 세계시민법의 구상을 비웃는 듯한 코소보 딜레마야말로 이 필요의 시급성과 그 규범적 전망의 설득력을 응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우린 코소보 딜레마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인권과 주권이 자리잡고 있던 도덕/법/정치의 연관이 해체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딜레마이라고 진단했다. 세계시민법의 길은 이 진단결과에 가장 충실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인권과 주권을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법에 매개시키고, 이로써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을 다시 확보하려는 기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선 먼저 인권과 세계시민법의 매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인권을 법, 즉 세계시민법에 매개시킨다는 것은 현재 초국가적 차원에서 도덕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인권을 법적 권리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인권침해를 직접 도덕적 관점에서 심판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행위처럼 법질서의 틀 안에서 제도화된 법적 절차에 따라 소추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인권은 도덕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도덕적으로 근거지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법적 권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 이 주장에는 나름의 중요한 논거들이 있다.

첫째는 기능적 혹은 실용적 논거이다. 인권이 도덕적 권리에 머물지 않고 법적 권리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이 3 가지 측면에서 개별 도덕적 인격체에게 던지는 과도한 부담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i) 도덕적 인격체는 자신의 경험적 성향을 인권이 명하는 도덕적 의무에 일치시켜야 하는 동기상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만 남겨둘 경우 행위자의 동기상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된다. 법적 권리로의 전환은 이 동기상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ii) 인권은 대단히 추상적이다. 따라서 인권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 개별 인격체가 감당할 수 없는, 해석과 추론 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 법적 권리로의 전환은 이 인지적 무규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iii) 마지막으로 법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그 요구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복잡한 조직상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둘째, 그러나 우리의 맥락에서 세계시민법 기획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도덕적 권리를 법적 권리로 변형함으로써 도덕과 정치의 단락으로서 인권정치가 갖는 도착성을 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인권정치가 표방하는 도덕의 정치화와 정치의 도덕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흔히 제기되는 슈미트류의 비판을 그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보편주의의 도덕적 함정을 폭로하는 이 비판의 합리적 핵심은 인권의 도덕화가 비록 도덕적으로 근거지워지만 법적 형식 속에서 가장 잘 보장되는 보호라인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보편주의적 요소를 일소하고 그것을 적과 친구의 적대적 정치논리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결론은 도덕과 정치의 단락의 또 다른 형태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밀로세비치식의 편집증을 낳을 뿐이다. 이것은 슈미트가 밀로세비치에 훨씬 앞서 허틀러의 편집증에 정치이론적 근거를 제공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권정치의 문제점은 정치에 보편적인 규범적 방향타를 도입하고, 이 보편적 규범의 정치적 실현을 시도하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법의 매개가 없이 도덕의 직접적 정치화와 정치의 직접적 도덕화를 추구한데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인권을 위한 공습의 도착성을 피하는 길은 “정치의 탈도덕화가 아니라 도덕을 권리들의 실정화된 체계로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¹⁾이다. 이렇게 현재 초국가적 차원에서

1) K. Guenter, 1994, 144.

도덕적 권리라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인권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는 법적 권리들의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세계시민법의 기획이다.

셋째, 세계시민법의 길은 현재 국제관계의 과도기적 법적 상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넘어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글로벌 사회관계의 양상은 자연상태와 법적 상태의 사이에 있는 듯하다. 현행 국제법은 국가간의 조약들, 유엔 협정, 각종 권리 협정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집행할만한 독자적인 강제력은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은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의 특징은 이미 지적 했듯이 약한 법률과 강한 군사력의 조합에 있다. 세계시민법으로의 전환은 바로 이 조합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넘어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조합구조의 특징은 무엇보다 국제법의 집행이 구조적으로 강대국의 관심에 좌우된다는 데 있다. 국제법이 개별 국가들에 대항하여 자신을 관찰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의 집행은 충분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들의 관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강대국의 관심은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먼저 강대국이 약한 법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적 내용에 대해 강한 도덕적 관심을 보일 경우 그것은 앞서 말한 인권을 위한 전쟁의 도착성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약한 법률은 강대국의 자의를 규제하지 못하며, 따라서 강대국의 관심은 일반적으로는 국익추구의 현실주의 원리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 관심이 선택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권정치에서 흔히 거론되는 강대국의 이중잣대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구조화된 상황에서, 강대국은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익을 선택적으로 관찰하게 되고, 법은 강대국의 이익을 숨기는 이데올로기적 베일의 역할만 할 뿐이다. 또 초강대국이 그나마 이런 약한 법률까지 거추장스럽게 여길 경우 강대국은 법의 이름이 아니라 도덕의 이름으로 자신의 패권적 이익을 관찰시키게 될 것이다.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세계시민법적 권리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국제법의 약한 법률과 강한 폭력의 조합을 강한 법률과 약한 폭력의 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비로소 국제적 규모에서의 폭력의 사용도 법적으로 규제되는 법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국익추구의 글로벌 사냥터로서의 국제정치가 세계적 내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하자면, 이런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최근의 인권정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정당성과 효율성의 괴리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절 : 세계시민법과 주권의 편집증

지금까지 인권을 위한 나토의 유고공습의 도착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길로서 도덕적 인권을 다시 법과 매개시켜 세계시민법으로 전환시키는 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계시민법의 기획에는 인권에 대한 관계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관계의 측면도 있다. 코소보 딜레마가 인권과 주권의 법적 매개 연관이 무너진 데 기인한 것이라면, 이 딜레마의 해결로서의 세계시민법은 인권과 주권의 새로운 매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획은 주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미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밀로세비치가 범례적으로 보여준 편집증적 정치구조를 치료하는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 주권 개념이 어떻게 해서 편집증의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선 공화주의 전통에서

이해하고 있는 국민주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전통의 국민주권 개념에서 우리는 우리의 논의 맥락과 관련된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개념내용상 그것이 신학적 - 형이상학적 유산을 갖고 있고, 둘째로 실체적이고 구체주의적 유산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주권사상의 출발점인 보댕에서 주권자는 절대적인 신의 형상을 닮았었다. 즉 그것은 전능하고 분할불가능했고 무오류의 절대적 존재였다. 군주의 어떤 실패도 저항의 이유가 되지 못하며, 주권자는 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주권자의 의지는 그 자체로서 정당했다. 루소는 이 군주주권 개념을 전도시켜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주권 개념으로 전환시켰지만 주권자의 절대적 형상은 여전히 잔존했다. 그리하여, 루소에 따르면,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양도계약으로부터 생긴 주권자는 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 법적 보호와 강제의 수신자인 개인은 법을 제정하는 집합적 주체인 주권자에 대해 어떤 주장도 제기하지 못하거나, 입법자라는 집합적 신체의 개별적 지절로서 주권자 속으로 소멸되어버린다. 여기서 공화주의 전통에서 인권에 비해 주권이 우선성을 갖는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주권자가 절대적으로 정당화되는 한, 그 주권은 양도불가능하며, 분할불가능하며, 무오류적이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이런 한 인민주권이 법적 인격체로서의 개인의 권리의 침해할 소지는 항상 갖고 있다.

이 가능성은 공화주의 전통의 인민주권의 구체주의적 성격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즉 국민주권은 국민이라는 실체적 신체 속에서 체현된다는 관념을 동반했다. 그런데 이 국민이라는 주권의 담지자는 테모스라는 성격과 에쓰노스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공화주의 전통에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양가적 관계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 입법자이지만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국민이 법적 형식의 일반성이나 혹은 법을 정당화하는 공론장의 구조를 벗어나 민족주의적 특수성 속으로 합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국민주권의 민주적 자결원리가 민족자결 원리로 환원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지적했듯이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정치적 공동성을 정치 이전에 미리 존재하는 문화적, 인륜적 동질성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이 경향 속에 담겨 있는 환원가능성이 절대주의적이고 무오류적 주권 개념과 결합하는 경우, 밀로세비치식의 편집증적 민족주의가 발생할 개연성은 높아진다. 즉 도덕의 이름이 아니라 주권의 이름으로 법을 정지시키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국민주권이 애초에 의도한 민주적 자기결정이 편집증적 민족자결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선 개념적인 면에선 주권 개념의 절대성과 무오류성 가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버마스의 절차적 주권 개념을 도입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국민주권을 사회화화시키고, 시간화시키며, 오류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것은 근대적 주권 개념의 바탕에 놓여 있는 주체중심적 사유틀을 지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하버마스는 주체 중심적 이성을 사회적 공간 속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며 역사 속에서 시간화되고,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자기비판적 소통적 이성으로 전환시킨다. 이성적으로 통합된 공동의지로서의 주권 개념은 이성 개념의 이 전환 속에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주체철학적 개념구성을 버리면 주권은 주체주의적으로 국민 속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헌법적 권한의 익명성 속으로 추방될 필요도 없다. 자기조직하는 권리 공동체의 ‘자기’는 토의적 의견 및 의사형성의 흐름을, 이것의 오류가능한 결과가 이성적이라는 추정을 얻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주체 없는 의사소통 형식들 속으로 소멸한다. 이로써 인민주권 이념과 결부된 직관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해석된다. 이 주권은 오직 의사소통적으로 산출된 권력으로서 자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민주적 절차와 까다로운 의사소통적 전제 조건들의 법적 제도화 속으로 물려난다. 정확히 보자면, 이러한 주권은 법치국가적으로 제도화된 의사형성과 ... 문화적으로 동원된 공론장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

주권을 이렇게 소통적 권력으로 파악하는 경우 주권은 법과의 매개를 유지할 수 있다. 소통적 권력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관철된다. 주권자는 어떤 구체적 인물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적 절차로서 등장하며, 소통적 권력은 이성적 절차를 통해 규제되는 소통과정이 갖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힘으로 나타난다. 제정된 법률의 정당성은 이 소통적 권력의 정당화하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동시에 소통적 권력이 입법능력을 갖기 위해선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주권이 입법자로서 법과 분리되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매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법성을 통한 정당성의 역설이 등장하는데, 이는 법을 정당화하는 주권적 권리가 직접적 형태로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를 통하여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권이 법과 매개되면서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이 새롭게 확립되는데, 하버마스에서 이것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의 동근원성 명제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근대법은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적 자율성은 집합적 의지에 의해 도구화될 수 없는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법을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고, 공론장에서 행사되는 시민의 공적 자율성, 즉 의사소통적 자유를 통해 정당화된다. 하지만 법을 정당화하는 시민들의 공적 의사소통과 참여의 권리 자체도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정당화하는 시민의 공적 자율성 자체가 사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매체를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은 서로를 전제하고 가능하게 하는 내적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토의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이다.

이상의 논의는 밀로세비치의 편집증을 방지하고 넘어서는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 절차화된 주권은 결코 법을 통해 보호받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다. 둘째, 수많은 포럼과 입법기구를 관통하면서 주체 없이 순환하는 의사소통의 흐름들 속에서 유동화된 절차적 주권은 더 이상 특정한 집합체 속에, 통합된 시민들의 물리적 실존 속에 집중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선 민주적 자기결정의 원리가 민족자결의 원리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차원에서의 주권과 법의 관계이다. 우리의 맥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시민법과 주권의 관계이다. 이 맥락에서는 두 가지 논제가 나온다. A) 세계시민법과 주권의 매개가 민주적 자기결정의 원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예컨대 세계시민법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국가에 개입할 때 그것은 민주적 자결권의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B) 세계시민법을 제정하는 글로벌 주권은 어떻게 가능하며, 이 주권은 국민국가적 주권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법치원리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세계시민법적 상태의 확립은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동반하며, 여기서 다시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국내 민주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ad B) 만약 우리가 전통적인 절대적 주권을 소통적으로 희석화된 절차적 주권 개념으로 재

구성한다면, 국가 차원의 민주적 주권과 글로벌 차원의 주권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다소 이완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주권이 소통절차와 소통의 흐름 속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나타난다면, 국내주권과 글로벌 주권의 관계는 국내적 소통망과 글로벌 소통망의 관계라는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권자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동질성을 공유하는 특정한 경계를 갖고 있는 운명 공동체의 집합적 주체로 이해하고 그의 자기결정권을 주권으로 이해한다면 경계넘기의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권의 장소가 소통의 흐름과 절차들 속에 있다면, 국민국가 차원의 주권과 초국가적 차원의 주권 사이에 연속선을 설정할 수 있다.

국내 민주주의와 초국가적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서 민주주의는 담론원리와 법형식의 결합으로부터 나온다. 공적 자율성과 사적 자율성의 내적 연관도 이 결합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는 담론원리와 세계시민법의 만남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 시민사회 속에서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속에서 관철되는 담론원리가 세계시민법과 만날 때 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 민주주의와 초국가적 민주주의는 의사소통 망의 연속성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소통과 토의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하는 담론적 민주주의는 국내 민주주의와 초국가적 민주주의 사이에 연속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ad A) 이런 연결관계를 고려할 때, 세계시민법과 주권의 만남이 처음부터 국가 차원에서 민주적 자기결정 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법의 제정에서 작동하는 소통적 권력과 국내의 입법과정에서 작동하는 소통적 권력 사이에 부분적이지만 연속성이 있다면 세계시민법적 권리로서의 인권이 국내에서의 민주적 자기결정권과 충돌하진 않을 것이다. 확실히 현재의 법적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세계시민법 기획이 요원한 상태에서, 그리고 담론원리와 세계시민법이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즉 초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한 국가에 개입할 때 그것은 민주적 자결권을 파괴했다는 의혹을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무조건 동일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자의 침해가 곧장 후자의 침해는 아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의혹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주권의 침해는 지금 당장의 민주적 자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민주적 자결을 복구하건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이 민주적 자결권으로 나아가는 자율적 경로를 침해한 것이며, 따라서 역시 민주적 자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소통적 권력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는 소통망의 연속성을 통해서 세계시민법을 제정하는 소통적 공간과 연속하고 중첩한다면, 우린 세계시민법이 개별 국가에서의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시민의 공적 자율성과 세계시민의 공적 자율성 사이에 중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인권 정치가 국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성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인권체제 자체가 민주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법치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세계시민법의 부재는 곧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시민적 공적 자율성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코소보 딜레마를 피하는 길은 세계 시민사회와 공론장에서 관철되고 있는 담론원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도 국민국가적 차원의 공론장에서 등장했던 담론원리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동일한 과제가 세계적 규모에서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인권 문제는 세계 민주주의 기획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코소보 딜레마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인권에 대한 토론

원지연(여수대)

- { (1) 90년대 주변사태법 제정/국기 국가법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가 가능할 수 있었던 환경은 무엇인가.(혹은 상황의 변화는 없는가)
- (2) 고바야시 요시노리를 비롯한 내셔널리즘적 운동 그룹의 움직임이 지지기반을 확대해가는 사회적 배경은 무엇일까.
- (3) 국기/국가(국민의례) 의무화를 인권적 측면의 후퇴로 판단하는 것은 일본의 특수상황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의 문제인가.
: *한국 내셔널리즘과 일본의 내셔널리즘과의 충돌 문제 ~*
- ↳ 일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3차원 치적'을 '한국' '국민' 뿐이 아니지?